

##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개정(안) 및 시행규칙(안) 건의서

〈목 차〉

-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. 개정의 취지      | 3. 개정의 내용    |
| 2. 개정의 골자 및 사유 | 4. 신·구조문 대비표 |

### 1. 개정의 취지

- 가. 1999.1.21일에 개정된 '도서관및독서진흥법' 제8조 제1항에 "도서관 및 문고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,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" 라고 근거 규정이 있고,
- 나. '도서관 및 독서진흥법' 제7조 제2항에는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제시하고 있으나, 도서관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사항의 처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행 법령의 현실화가 필요하며,
- 다. "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규칙"에는 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에 대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의 신설이 필요함.
- 라. 개정대상 조문  
"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" 제7조 제2항 4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규정 신설<표1, 표2 참조>

### 2. 개정의 골자 및 사유

개정의 골자와 사유는 다음과 같음.

골 자	사 유
<p>1.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7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)</p> <p>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에서</p> <p>“4.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자료 등”을 추가 신설</p>	<p>1. 도서관업무 전산화 등 환경의 급변으로 현행 법령의 현실화가 필요하고, 모든 도서관이 폐가제에서 개가제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급증과 대출자료의 분실로 인한 대물 변상 등 망실자료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하고,</p> <p>2. 장서점검 결과 연속 3회이상 소재 불명된 자료 및 대출자가 3년이상 신원 확인이 안되어 회수 불가능 자료 등에 대한 신속한 D/B수정 및 도서원부 정리를 통하여 서가자료와 검색자료를 일치시킴으로써 이용자에게 시간 절약과 신뢰를 꾀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.</p>
<p>2.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규칙에는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절차가 없음으로 다음과 같이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.</p> <p>제○조(자료의 교환 및 이관)영 제7조1항 각호에 의하여 자료를 교환이나 이관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, 교환 및 이관한다.</p> <p>제○조(자료의 매각 및 소각)영 제7조1항 각호에 의하여 교환 또는 이관할 자료중 수요처가 없는 자료는 도서관장이 매각 또는 소각 처리할 수 있다.</p>	<p>1.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7조의 수행과 위 사유1, 2에 따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.</p>

### 3. 개정의 내용

가.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중,

“제7조 제2항의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”에서 각호에

“4.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자료 등”을 신설한다.

나.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규칙 중,

“제○조(자료의 교환 및 이관)영 제7조1항 각호에 의하여 자료를 교환이나 이관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, 교환 및 이관한다.

제○조(자료의 매각 및 소각)영제7조1항 각호에 의하여 교환 또는 이관할 자료중 수요처가 없는 자료는 도서관장이 매각 또는 소각 처리할 수 있다.

제○조(자료의 폐기 및 제적) 영 제7조 2항 각호에 의하여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, 장비 등 사후처리를 하여야 한다.

제○조(폐기 및 제적자료의 전문가 소견서) 영 제7조 2항에 의한 폐기대상 자료 중에서 이용가치의 유무 등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소견서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.”를 신설한다.

#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

##### 가.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개정(안)

시행령(현행)	시행령(신설안)	비고
<p>제 7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)</p> <p>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 및 문고자료(이하"자료"라 한다.)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자료의 효율적인 보존·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</p> <p>2.자료 이용자의 편의</p> <p>3.도서관 또는 문고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</p> <p>4.자료의 내용과 전문성</p>	<p>제7조 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	신설
<p>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이용가치의 상실</p> <p>2.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</p> <p>3.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</p>	<p>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현재와 같음)</p> <p>2. (현재와 같음)</p> <p>3. (현재와 같음)</p> <p>4.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자료 등</p>	
<p>③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또는 문고의 전체장서의 100분의 3이내로 하되, 당해연도 수입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③ (현재와 같음)</p>	

나.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규칙 개정(안)

시 행 령 (현행)	시 행 령 (신설안)	비고
없음	<p>제0조(자료의 교환 및 이관)영 제 7조1항 각호에 의하여 자료를 교환이나 이관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, 교환 및 이관한다.</p> <p>제0조(자료의 매각 및 소각)영 제 7조1항 각호에 의하여 교환 또는 이관할 자료중 수요처가 없는 자료는 도서관장이 매각 또는 소각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제0조(자료의 폐기 및 제적) 영 제 7조 2항 각호에 의하여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, 장비 등 사후처리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0조(폐기 및 제적자료의 전문가 소견서) 영 제7조 2항에 의한 폐기 대상 자료 중에서 이용가치의 유무 등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소견서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.</p>	신설



[별첨 3호 서식]

자료에 대한 소견서

청구 기호		저 자	
등록 번호		서 명	
출판사			
출판 년도			
<p>소 견 :</p> <p>1. 자료의 내용이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( )</p> <p>2. 도서관 장서로서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료 ( )</p> <p>3. 기타사유 ( )</p>			
<p>종합 의견 :</p> <p>1. 폐 기 ( )</p> <p>2. 보 존 ( )</p> <p>3. 교환 또는 이관 ( )</p>			

년 월 일

○ ○ ○ ○ ○ 인

○ ○ ○ ○ ○ 도서관장 귀하